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서 의결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 기계설비공사업은 2011년 말까지 유예

건설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 등록을 금지한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은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계설비공사업은 기술적 특성을 감안하여 2011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허용은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이 불필요한 소규모 공사'에 한해 오는 2009년 7월부터 가능해진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하기로 합의했고, 이어 19일 건교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4월 26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지만 불합리한 점에 대해 의견을 굽히지 않고 소신있게 피력하면 진실은 통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또한 더욱 성실한 자세로 고품질 시공과 시장질서 확립에 매진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각오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번 건설법 개정안에 설비건설업계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적극 앞장선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30여년 전에 만들어진 건설법은 변화무쌍한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해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많아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라면서 "이번 건설법 개정은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나 일부만 반영됨으로써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법 개정이어서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박종학 회장은 그러나 "주변의 압력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단체장으로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우리업계의 뜻을 충분히

“25개 전문공종 중 기계설비만 4년간 유예된 것은 기계설비가 독립된 공종으로 건설업의 중심축인 토목·건축·기계·전기의 한 축으로 확실한 인식”

그동안 건설법 개정안 중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법안과 관련하여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의 특성과 겸업제한 폐지의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기계설비의 특성을 이해함은 물론 기계설비가 건설업의 4대 중심축인 토목·건축·기계·전기 중의 하나인 중요한 공종으로 확실하게 인식하는 등 많은 공감과 관심을 이끌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일반·전문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면서 기계설비공사업종만을 4년간 유예기로 결정한 것은 그동안 우리업계에서 기계설비가 건축·토목 공종과는 학술적·기술적 특성이 달라, 다른 전문업종과는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되었기에 가능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법 개정 과정에서 비록 작은 협회

헤아림은 물론 우리의 의견을 끝까지 주장함으로써 기계설비가 25개 공종 중 특별히 인정받은 것은 큰 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협회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이 반영된 전문간 공동으로 원도급 공사 참여 허용은 곧 분리발주를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건설법은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므로 우리업계가 더욱 노력하여 불리하지 않은 법령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학 회장은 또 "특히 이번 건설법 개정 과정에서 우리협회 13개 시·도회장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많았다"고 밝히면서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밝은 전망이 크게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건설법 개정안 중 주요 개정내용 및 국회의원들의 발의내용을 간추려 게재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민간발주공사에도 적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중 주요 내용은 일반 · 전문 겸업제한 폐지 외에 △단순복합공사 원도급 허용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의무화 △하도급 계획서 제출 의무화 △하수급인 보호 강화 △협회 업무 위탁 강화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등이다.

이 중 민간발주공사에서 국민연금 · 건강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 정산제도 도입은 올해 공공공사 적용에 이어 내년부터 민간공사에도 적용됨으로써 전 공사에서 보험료를 받게 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특히 청와대 건설산업 상생 협력 혁신보고회에 박종학 본회 회장과 강석대 서울 특별시회 회장이 직접 참석하여 대통령께 국민연금 · 건강보험 비용의 원가반영 및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건의함은 물론 건교부장관에게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밖에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 차별시정위원회,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한 결과 올해부터 공공공사에서 국민연금 · 건강보험 비용에 대한 사후정산제도가 시행되었고, 내년부터 민간공사에도 적용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국민연금은 직접노무비의 9%, 건강보험은 직접노무비의 4.48%이며, 사업주 부담분은 6.74%에 해당되나 근로자 부담금까지 합치면 13.48%에 달하고 있다.

또한 총 인건비의 11.44%(산업재해보상보험 3.4%, 고용보험 1.3%, 국민연금 4.5%, 국민건강보험 2.24%)를 차지하는 사회보장보험비용 등이 이번 건산법 개정으로 민간공사까지 적용됨으로써 설비 건설업계의 많은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 · 전문 겸업제한 폐지

- 법 제12조(건설업자의 겸업제한)의 일반, 전문간 겸업제한폐지(시행일 2008. 1. 1.)
- 2008년부터 3년간 일반, 전문건설업간 상호실적 한시적으로 인정
단, 기계설비공사업은 4년 유예(2012. 1. 1. 시행)

◎ 단순복합공사 원도급 허용

- 2개 공종 이상의 소규모 단순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원도급 허용(시행일 2009. 7. 1.)

◎ 납입보험료 사후정산 의무화

- 민간발주공사에서 국민연금 · 건강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납입한 보험료는 정산(시행일 2008. 1. 1.)

◎ 하도급계획서 제출 의무화

-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건설업체는 과태료(500만원) 부과(하도급계약금액은 계약서 명시)(시행일 2008. 1. 1.)

◎ 하수급인 보호 강화

- 수급인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시행일 2008. 1. 1.)

◎ 협회 위탁업무 강화

- 건설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시공능력평가 및 공사 실적 확인 조사 등을 협회에 위탁하여 부실건설업체 퇴출 및 내실화 추진(시행일 2008. 1. 1.)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 시참자에 의한 다단계하도급,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함(2008. 1. 1.)

부 칙

제3조(겸업제한에 관한 특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이하 이 항에서 “기계설비설치업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수 없고 기계설비설치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67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발언 요지

□ 일 자 : 2007. 4. 17~4. 19.



주승용 의원(중도개혁통합신당 · 전남 여수시)

- 당초 입법사유인 전문건설업체 보호 측면에서 볼 때 겸업제한을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임
- 특히 **설비건설업계와 같은 중소건설업계에서는 겸업제한 폐지 시기를 좀더 유예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등** 업계 간의 갈등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좀더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함



김석준 의원(한나라당 · 대구광역시)

-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는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복합공사는 원도급 허용 발의
- 겸업제한 폐지법안은 상당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자들과의 합의를 꼭 해야 함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 · 북제주)

- 점업제한 폐지에 **대형 건설업계는 찬성이고 중소 건설업계와 설비건설업계가 반대하고 있음**
-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약한 업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함.
- 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초대형 및 대형업체 중심으로 법이 만들어 진 것 같은 우려가 있음
- 점업제한 폐지법안은 그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개정해야 함



김재경 의원(열린우리당 · 경남 진주시)

-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원리는 약한 자들에게 법적으로 힘을 실어주고(근로기준법 등), 강한 자들은 권한 행사를 억제(공정거래법 등)하는 것임
- 점업제한 폐지법안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에서 볼 때 경제적인 약자들이 설 수 있는 여지가 없음
- 김석준 의원이 발의한 전문간 공동으로 원도급 공사 참여 허용 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야함



한병도 의원(열린우리당 · 전북 익산시)

- 정부는 일반 · 전문 점업제한이 폐지되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잘못된 견해라고 봄
- 정부는 점업제한제도 폐지로 인한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나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아직도 일부 업계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
- 두 개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 중에서 종합적인 계획 · 관리 ·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 공사가 상당히 있으므로 이러한 공사는 일반건설업자가 원도급 받아서 다시 전문에 하도급 주어 시공하는 것 보다 등록된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받아서 시공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절감 및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 경북 영천시)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반 · 전문 점업제한 폐지

를 하면서 **중소전문업체인 기계설비업계는 4년을 유예시켰으나** 과연 이 기간 안에 중소전문건설업계가 독자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지 우려되며, 유예기간이 지나서도 문제점 발생시 유예기간 연장 필요

-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의 명분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의 취지이지만,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겸업제한이 폐지되면 중소전문업계는 생존할 길이 막막할 것으로 우려됨
- 중소전문건설업체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건교부가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줄 것을 부탁함
-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고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건의함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 중소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으나 국가 정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건설업체의 경쟁력 및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겸업제한이 폐지되어야 함
-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 문제는 미시적인 입장

에서 보면 개별업체간의 역량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피해를 보는 업체도 있을 것임

- 겸업제한 폐지 유예기간 안에 중소전문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며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 중에 있음



조일현 위원장

(중도개혁통합신당 · 강원도 홍천)

- 정희수 의원이 겸업제한에 대한 유예시기가 업체간에 준비 및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냄
- 정희수 의원이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염려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 이에 대한 대비책 및 좀더 상세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정부측에 요청한 바 있으므로 정부 측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정희수 의원께 보고해 주시기 바람